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워크숍 보고서

세션명	멀티스тей크홀더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주소자원법 개정 방향			
일시	2017.9.15.(금) 10:45~12:15	장소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소회의실 5	
참석자	사회	이동만(KAIST)	발제	윤복남(법무법인(유) 한결)
	패널	심우민(경인교육대학교)		김기중(법무법인 동서양재)
		전길남(KAIST)		
플로어	약 15명 참여			

워크숍 취지	<p>인터넷 주소자원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라는 민간 기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기업·기술계·학계·이용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한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p> <p>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주소분과에서는 2016년 <한국 주소자원 거버넌스 현황과 향후 방향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그 후속 작업으로 KIGA 주소분과에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p> <p>국내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역사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국내 주소자원 거버넌스를 보다 민주적이고 다자간 협력에 기반한 거버넌스로 개선하기 위해, 주소자원법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p>
---------------	--

1. 바람직한 인터넷거버넌스를 위한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방향

- 열린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할 예정

- 왜, 지금, 법률개정인가?

거버넌스는 협치의 과정이며, 법으로 제도화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제도화를 논의할 필요성이 농후해졌다. 법률안을 제안하고 논의해보자. 인터넷 거버넌스는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의 시작과 지속가능한 미래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1) 한국 인터넷거버넌스 역사

- 인터넷주소위원회 -> 인터넷주소정책실무위원회->인터넷발전협의회->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 협의회: 2015년 KrIGF 시작 (다자간 인터넷거버넌스 활성화방안) -> 2016(주소자원 거버넌스 현황과 과제 / KIGA 주소분과 워킹그룹- 한국주소자원 거버넌스 현황과 향후 방향 보고서 기반) -> 2017(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방향)

(2) 무엇이 문제인가? 그 해결책은?

- 이해당사자의 참여부족 : 정부의 참여 부족(인터넷주소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심이 없음. 혹은 거버넌스 외의 다른 방식을 생각하거나) + 기업 및 이용자의 참여부족

- 거버넌스 기구의 지속성 및 안정성 부족 - 조직적, 재정적 취약성

-> 작년 제시된 해결방안 = 정부의 참여 의지와 투자, 인터넷주소자원 거버넌스 기구 제도화,
이해당사자의 참여활성화 등

-> 2017년 현재 과제 = 제도화와 참여활성화의 상호모순관계 해결에 있어서 법률안 개정이 필요

(3) 인터넷 주소자원법 개정 취지

- 정부주도의 하향식 주소자원 관리체제로부터 변화해야 할 필요성 증가

- 민간 각 이해당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기초로 한 상향식 주소정책 논의기구 구성의 필요성

- 국제적 기구인 ICANN, OECD 등에선 이러한 상향식 멀티스тей크홀더의 의사결정구조가 여러 국가들에 의해 채택

(4) 인터넷 주소자원법 개정안 (1안)

- 인터넷주소에 관한 정부권한을 민간에 대폭 이양

- 민관정책기구로서 멀티스тей크홀더 구조에 의한 상향식, 민주적 선출에 의한 인터넷주소위원회 신설

- 정부의 최종적 감독권한은 유지

-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인 KISA 소속 '인터넷정보센터'의 재단법인화 고려

(5) 인터넷 주소자원법 개정안 (2안)

- 현실적으로 1안 추진이 어려울 경우 선택하면 되는 수정대안으로서의 존재

- 현재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의 선출절차를 변경하여 상향식에 가깝도록 개정

-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적극참여를 위하여 인터넷주소정책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멀티스тей크홀더 방식으로 운영(2005-2006 실무위원회모델의 단점 보완)

(6) 개정안 평가

- 1안은 법률 전면개정이 필요하며 상당한 논의 및 협의가 전제

- 2안은 부분적 변화이며 상대적으로 도입하기 수월할 것으로 예상

- 여건에 맞게 논의하되, 법개정의 진정한 취지는 민간 참여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

- 법 개정안 현실화를 위해 국회의원의 의원이법 가능성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부 의견수렴, 각 이해당사자의 공개적 의견 수렴.

- 설득 논거로서 국제적인 사례 수집(OECD국가 내 선진국 주소거버넌스 사례 연구), 국내 다른 분야에서의 유사사례 수집(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물등급위원회 사례 연구)

- (OECD자료) 정부가 인터넷주소를 관리하는 국가는 핀란드, 이탈리아, 한국, 스페인, 중국 등 몇개 국 안됨.

- 일본 역시 민간법인이 관리하는 방식(JPRS), 정부는 필요시 상의 및 자문위원회에서 관리감독 역할에 한정.

<패널 토론>

(전길남 명예교수)

- 멀티스тей크홀더 작업을 하기 전에, 그 맥락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주소위원회 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멀티스тей크홀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개념 정리를 해야 한다. 국외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 내에서의 명확한 정의가 세워져야 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재정 지원이 가장 큰 문제이다. .kr로 벌어들인 수익 등이 인터넷 발전을 위해 쓰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인터넷 주소 등록비를 세금의 특별한 형태로 생각하는 것 같다.

- 인터넷주소자원법이 가리키는 '주소'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또한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도메인 네임이나 IP 주소만 의미하는 것인가, 카카오톡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포함하는 것인가.

- 구 소련에서 현재 러시아로 국가도메인네임의 전환을 이룬 유일한 사례인 러시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러시아의 경우 원래 .ru 는 없고 .su(소련)만 있었다. 우리나라도 통일을 대비하여 이와 같은 준비를 고려해야 한다. 15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변화가 없다.

- 중국은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민주적으로 거버넌스를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 모델도 좋은 것 같다.

(김기중 변호사)

- 10여년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온 것의 핵심은 주소자원관리의 국제적 구조가 bottom-up과 multistake-holder 라는 점이다. 국회를 통해 법률안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개정법 1안을 가지고 추진해야 2안이라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2안의 난점은 기존에 있다가 사라진 실무위원회를 다시 만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지일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실무위원회가 대체하는 것인데, 실무위원회의 필요성과 심의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다.

- 1안의 경우 주소위원회 신설시 행정기관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조직의 형태는 재단법인의 형태이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법인이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심우민 교수)

- 입법전략적인 차원에서 의견을 드리겠다. 현실적으로는 2안이 통과되기 쉽지만,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두 가지 안을 의원발의로 모두 올리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국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넘어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회 논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 주소자원법이 총 9회 개정되었는데 내용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최초의 입법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당시에 민간 의견 반영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고민했던 것이 보인다. 그러나 법이 한번 개입되기 시작하면 법 체계 안에 간혀버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 현행 입법 역시 넓은 정의를 택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국가의 관여도가 크다. 따라서 법안 제정은 기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만들고, 문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윤복남 변호사)

- 법개정 및 제도의 기반으로 멀티스테이크홀더를 단순 민관협의체로 볼 수는 없다. 법 개정 이상의 문화적인 차원, 즉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 조성이 가장 필요하다. 심우민교수가 제시한 2개안 동시추진에 동의한다.

-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미국 상하원의 개념에서 착안하였다. 심의위원회 - 상원의 역할 / 실무위원회 - 하원의 역할. 책임 부담이 적은 경우 발언 및 참여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

(전길남 명예교수)

-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은 사실 기업 중심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시민사회의 참여 및 역할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멀티스테이크홀더 개념은 오래된 개념이지만 우리나라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았다.

(이동만 교수)

-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면 크게 3가지이다.

(1) 변하는 인터넷 환경에서 주소자원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2) 멀티스테이크홀더라는 것이 무엇인가? - 자연스러운 참여와 개방적 논의가 정책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3) 재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법제도 정착의 목적은 안정적 재정확보에도 있다.

(심우민 교수)

- 우리나라에서 멀티스테이크홀더 개념이 법으로 제대로 반영된 사례가 없다.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해왔다. 주소자원개정법이 멀티스테이크홀더라는 새로운 문화를 도입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플로어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주소자원과 관련된 논의가 점차 그 중요성이 희미해지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사회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번이 멀티스테이크홀더 거버넌스를 구현할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플로어 : (안정배, APSIG)

정책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보통 중재의 역할이나 감독 역할을 하는데, 만약 정부가 이해관계자의 입장으로 참여한다면 그 폐해를 고려해야할 것이다.